

충주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2007. 9. 21(금)

조례안건심사보고서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007. 9. 5	2007. 9. 5	2007. 9. 14	2007. 9. 14	경제과장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	"	"	"	자덕기 의원
충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	"	"	"	산림녹지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 10. 29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

나.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자동차의 급증으로 교통·환경문제가 심각해져 자동차를 대체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활용가치와 웰빙열풍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을 장려하여 시민 건강을 도모

다.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로수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3. 주요내용

가.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인정시장의 인정 (안 제2장)
-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안 제3장)
- 임시시장의 개설 · 등록 (안 제4장)

나.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시장은 충주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매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에 자전거 시설 정비계획을 반영 (안 제5조)

다.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가로수 식재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보행자의 수, 친환경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식재 (안 제4조)
- 시장은 병해충으로 인하여 가로수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 구제하는 조치를 강구 (안 제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안 제1장 총칙에서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정의하고 일단의 시장구역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산가치를 상실한 편의시설에 대해 철거하는 내용과 상인조직과 시장관리자가 화재예방,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 안 제2장에서는 개념적으로 인정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구역과 구체적인 점포의 수, 면적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인정시장으로 인정되는 시설분야와 인정할 수 없는 시설분야를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제8조에 있어서 인정시장의 면적에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규정한 것인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의회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이 ‘포함되는’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된바 ‘제외되는’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 안 제3장에서는 시장활성화구역의 개념과 범위, 지정절차를 규정

- 안 제4장에서는 임시시장을 개설할 때 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 건축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장(市長)에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의 안전유지,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불만을 처리하며, 상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임시시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장에서는 시장이 운영하는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장설치를 희망하는 농어민의 자격과 사용료 감면을 규정
- 안 제6장에서는 상인회 설립기준과 설립에 필요한 절차, 상인회에서 시설경영현대화사업, 매출과 영업활성화를 위한 사업, 상인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상인회에서 시장(市長)에게 정기·부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
- 안 제7장에서는 시장활성화구역이나,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 화재예방, 청소 방범활동, 상거래질서 유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장에서는 시장에 설치한 시설물 중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등은 시장의 소유로 하고, 그 밖의 일정율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였거나 상인조직이 일정율 이하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상인조직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위탁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 안 제9장에서는 법령에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권한을 위임하여 법령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며 부칙에서는 법령개정에 따라 구조례를 폐지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기득권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을 둠

나.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는 자동차 급증으로 인한 교통·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근거리 자동차를 대체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는 측면과, 웰빙 열풍에 따른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의 방법 중의 하나로 또 레저활동으로 자전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

- 국내에서도 3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권장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그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아 많은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주택 내에서 녹이 슬고 있다고 함
-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인도와 병용하게 되는데 시내일원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블록으로 된 자전거도로는 침하되거나 불쑥 솟아오르는 등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중간에 차도와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자동차의 난폭운전이나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안심하고 다닐만한 곳이 별로 없고 차로와 이음새도 매끄럽지 못하여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은 물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 우리시는 탄금대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비롯하여 총연장 178km의 자전거 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17%에 불과한 30km정도 만을 가지고 있음
-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장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도 탄금대 자전거전용도로나 호암지주변의 자전거 도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 공간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공간은 물론 여가와 산책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면 경주 보문관광단지 자전거 전용도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임

- 본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며, 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하도록 명문화
- 조례안 제5조에서 시장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자전거 이용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례안 제2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과 기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열거

시장이 자전거이용에 대한 블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시민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시민이 누구든지 자전거 이용을 원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주체로 개인, 단체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파리시의 「공용자전거 대여제도」와 같은 맥락 시범지역과 시범기관의 지정, 자전거 이용의 날, 자전거대회, 자전거 교육, 전담부서의 설치 이 모든 것이 정책적 ·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

- 30여년 전후로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는 중요한 교통수단 중의 하나였고 또한 중요한 재화(財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다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전거가 줄 수 있는 의미는 교통수단과 재화를 넘어 우리는 자전거로 인하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

다.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내용을 토대로 산림청의 지침시달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
- 조례안 제3조의 규정을 보면 법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가로수 관리부서는 도로관련 여러 가지 사업의 경우, 전기·통신시설과 관련되는 경우 등 가로수의 교체나 이식 등의 경우 관리권자로서 시설관리를 위한 통제방안을 규정해 놓았고, 이를 어기는 경우는 법에서 벌칙을 정함
-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핵심은 가로수에 대한 이식, 제거,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 또 사고나 인위적인 행위로 인해 가로수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가로수를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조례안 제7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

-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서 적법하게 승인을 얻은 '원인자'는 가로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되 원인자의 사정에 따라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가로수를 직접 이식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조례안 제11조 제2항에서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가로수에 피해를 입힌 훼손자의 경우 또한 시장은 부담금을 징구 할 수 있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조례안 제12조에서 원인자·훼손자가 직접복구한 경우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가로수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 활착(活着)여부를 가려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복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오늘날 가로수의 역할은 매우 커져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파 중 알파파를 증가시켜 일상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증대시키며, 최근에는 소음예방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고, 광합성작용을 통한 대기정화기능을 하여 무엇보다도 지구 온난화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 이 조례안은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 지금까지 명문화되어 있지 않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일은 우리의 행복추구는 물론 크게는 생명을 지키는 일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 질의 : 상인 본인들이 노력하고자 하는 자구책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답변 :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시키고 있고 재래시장 육성 종합계획에 시장별 특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음

나.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질의 : 도시계획시설 계획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을 등 한시 해왔음
- 답변 : 보완하도록 하겠음

다.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질의 : 가로수 수종을 제한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 :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 정해져 있음

6. 심사결과

가.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수정가결

나.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다.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수정가결

붙임

1.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3.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